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292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16일
4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
II. 제안이유

- 자원봉사의 기본법이자 상위법인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 조항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부재하여 교육자원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.
- 이에, 현 조례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공헌을 평가하고 격려함으로써 교육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
III. 주요내용

○ 포상 규정 신설 (조례 제6조의2)

-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격려를 위해 ‘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’ 을 규정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3조, 제4조, 제12조,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,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1조

2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)

3. 협의 : 감사관, 민주시민생활교육과, 예산담당관과 협의완료

4. 기타

○ 입법안(신·구조문 대비표 포함) : (별첨 1)

○ 입법예고(2024. 9. 12. ~ 10. 3.) 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별첨 3)

○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○ 부패영향평가 :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(별첨 4)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(별첨 5)

○ 학생인권영향평가 : 자치법규·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(별첨 6)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심혁보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92호로 제출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격려함으로써 교육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는 2016년 교육인생이모작 지원센터로 시작하여 2022년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(2022.4.21.)됨에 따라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현재는 서울시 소재 학생 및 학교 중심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고자, 49개의 봉사단, 897명의 봉사자들이 사업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

[표-1]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사업별 구분 (2023.12.31. 기준)

(단위: 단, 명, 기관)

구분	봉사단	봉사자	봉사활동 수혜기관					계
			유	초	중	고	기타	
센터역점사업	4	325	0	91	9	1	1	102
대외·부서협력사업	12	246	0	27	0	31	7	65
공모사업	21	225	0	32	8	5	13	58
강동송파교육지원청사업	12	101	0	47	0	0	1	48
계	49	897	0	150	17	37	21	273

- 그러나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는 자원봉사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함으로써 교육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.

나.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포상을 위해 제6조의2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- 자원봉사의 기본법인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2조는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, 자원봉사단체,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¹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하고 있는바,
- 동 개정조례안이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은 조례안의 취지상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.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김명신(2180-8269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1)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8조(포상)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「상훈법」에 따른다.

관계 법령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34호, 2023. 8. 16., 타법개정]

제12조(포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, 자원봉사단체,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